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68

발의연월일: 2025. 4. 9.

발 의 자:윤재옥ㆍ김상훈ㆍ김정재

김기웅 · 서일준 · 최수진

정희용 • 박준태 • 정동만

최은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Tech)을 접목한 부동산(Property) 서비스인 프롭테크 등 새로운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음.

부동산 플랫폼은 2022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데이터댐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운영되어 왔으며 2025년에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향후 부동산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성과 확산에 있어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데이터의 제출 등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 수집·관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제 정 안 제13조의2(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생산·유통·활용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분야 빅데이터 활용을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수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데이터의 제출 등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
<u>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

이터의 범위, 데이터 수집·관 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 다.